

北韓女性의 政治參與 研究

孫鳳淑

(中央公務員教育院 教授)

<目次>

- | | |
|--------------|------------------|
| 1. 序論 | 나) 지방주권기관 |
| 2. 女性的 社會的地位 | 다) 정무원 |
| 3. 女性的 政治參與 | 라) 노동당 |
| 1) 간접참여 | 4. 「여맹」을 통한 정치활동 |
| 가) 선거권 | 가) 조직 |
| 나) 정치학습 | 나) 간부 |
| 다) 군중대회 | 다) 주요사업 |
| 2) 직접참여 | 5. 結論 |
| 가) 최고인민회의 | |

1. 序論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결로 인한 解放은 李朝 5백년간 유교사상의 전통적
인 因習에 얹매여 온 韓國女性들에게 하루 아침에 남녀평등이라는 실로 엄청
난 선물을 안겨다 주었다. 그러나 解放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밀어닥
친 南北分斷에 따른 民主體制와 共產體制의 대립된 社會는 단순히 政治體制
뿐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영역은 물론이고 女性社會에까지도 심각
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일한 역사와 문화속에서 동일한 女性像을 추
구해 오던 南北의女性들은 각기 다른 政治體制속에서 「男女平等이라는 선
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어떻게 소화시켜 나갔는가? 이제 分斷 30
여년을 맞아 北韓은 어떠한 女性像을 정립해 가고 있으며, 그들의 生活相은
어떤지 살펴 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社會主義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하고 있다는 북한 여
성에 대한 연구는 北韓社會를 究明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北韓女性社會에 대한 연구는 家族

制度를 중심으로 한 여성연구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막대한 勞動力과 조직력으로 북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北韓女性들의 政治生活을 政治參與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차지하는 북한여성의 地位를 30年 略史를 통하여 概觀함으로써 北韓女性의 實像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통하여 北韓女性들이 얼마나 政治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참여정도를 살펴보고, 이들 女性政治人們이 여성문제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북한 최대의 여성단체인 「조선민주여성동맹」이라는 조직을 통한 여성의 政治活動 내지는 단체활동의 모습을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사회에 있어서의 「여맹」의 역할을 구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주로 『노동신문』, 『조선중앙년감』과 같은 북한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女性의 政治參與에 대한 자료는 그쪽 문헌에도 정리된 것이 없었으므로 신문, 잡지, 소설 등의 각종 문헌과 심지어는 방송에서 청취된 자료까지 참고하여 체계화시켜 본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연구가 되지 못했으나 이러한 조그만 출발이 앞으로 남북한 女性의 비교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社會主義 諸國의 여성문제와도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女性의 社會的 地位

1946년 7월 30일에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다 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동등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출발한 북한의 女性은 사회와 가정생활의 변화와 함께 그들의 地位도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여성들이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解放」되어 社會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같은 北韓女性의 地位變化는 북한의 社會主義建設의 基本施策과 一致함은 말할 것도 없다.⁽¹⁾

(1) 이것은 북한의 경우 뿐만이 아니라 소련과 중공의 여성운동 역시 당시 당시의 국가시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사회주의 전선과 발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arbara S. Deckard, *The Women's Movement: Political, Socioeconomic &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5), pp. 223-224.

북한의 家族制度는 경제의 社會主義化와 밀접히 결부되어 왔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45년부터 1953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가정에 남아 있는 봉건적인 遺習을 없애고 혼인과 이혼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자유로운 혼인과 이혼이라는 측면에서는 女權의 신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시기의 女性活動은 문맹퇴치와 계몽운동 등 주로 초기의 여성운동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종전과 같이 家事에 종사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 있었던 6·25동란은 南韓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지만 北韓의 가정생활과 여성들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하나의 分水嶺이었다. 특히 남성들의 戰時動員으로 인한 勞動力 부족은 여성들로 충당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 2 단계는 휴전후 社會主義에로의 改革시기이다. 즉 1954년부터 집단농장화가 시작되었고 식량의 배급제도가 실시됨으로써 1958년에는 사실상 私有財產制度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완전히 社會的・集團的인 경제활동으로 전환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共產主義의 土着化를 내세우면서 개개의 인간을 社會主義 社會에 적응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改造하는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시기이기도 하다.⁽²⁾

제 3 단계는 1961년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社會의 경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革命化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女性들에게 부여된 주요 임무는 자신이 共產主義思想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또한 공산주의의 代를 이을 「後備隊」로 양육시키는 일이다. 정치적으로는 당의 唯一思想體系가 철저하게 확립되고 온 社會를 革命化하고 勞動階級화하는 기간으로서 모든 여성들에게는 「金日成 主體思想」으로 무장케 하는 정치교양과업이 활발히 전개된 기간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점차 가정으로부터 社會로 진출하여 초기 전체노동력의 20%에 불과하던 여성노동력이 1976년 현재 전노동인구의 48%를 점하게 되었다⁽³⁾ 이것만 보아도 오늘날 북한여성의 社會進出이 어느 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그들의 「解放」으로 간주하고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여

(2) Chong-Sik Lee, *Korean Workers' Party: A Short History*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8), Chap. 6 참조.

(3) 노동력의 남녀대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해방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실질적인 해방이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따라서 黨 제5차 대회에서는 여성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문제를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던 것이다.⁽⁵⁾

1972년 12월 25일에 개정된 북한 新憲法 제62조는 “……국가는 부인을 가사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가능한 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노동법에서는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으나 3명 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는 6시간으로 정하고⁽⁶⁾,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법 운영상의 문제를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의 법적 지위는 어느 선진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 대	노동력의 男女比率 (%)	
	男	女
1956	80.0	20.0 ⁽¹⁾
1961	67.7	33.3 ⁽²⁾
1963	63.8	36.2
1964	61.5	38.5 ⁽³⁾
1974	55.5	44.5 ⁽⁴⁾
1976	52.0	48.0 ⁽⁵⁾

자료출처 : (1) 『조선중앙년감 61』, p.116.

(2) 『조선중앙년감 62』, p.264.

(3) 『조선중앙년감 65』, p.164.

(4) 『조선중앙년감 75』, p.334.

(5) 『로동신문』1976.7.30日字

(4) 마르크스는 여성의 지위향상은 “여성의 노동력에의 인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만이 진정으로 여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했다. 레닌 역시 여성이 가사에 머물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위치가 변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완전한 여성해방과 남녀 평등의 길은 사회경제체제의 생산활동에 여성의 참여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하였다. Michael Paul Sacks, *Women's Work in Soviet Russia: Continuity in the Midst of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pp. 168-169.

사실상 가사와 노동의 이중부담은 비단 사회주의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오늘날 전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갖는 공동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5) 『조선중앙년감 1975』, pp.139-140.

(6)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 6기 제 2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1978.4.18) 제18조.

(7) 상기 노동법 제37조.

이와 같은 여성의 전면적인 사회진출은 학령전 아동을 위한 託兒所와 유치원과 같은 집단적 양육을 불가피하게 한다.⁽⁸⁾ 탁아소는 49년 12개로 시작된 것이 66년에는 23,251개로 적령기 아동의 77%를 수용하고 있다. 유치원 역시 64년 3,918개로 시작한 것이, 66년에 15,218개로 적령기 아동의 60%를 수용하게 되었고, 78년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의 총수는 6만여 개로 거의 백 %에 달하는 350만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女性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치는 어린이의 양육에 그치지 않고 食生活 改善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식품가공업을 발전시켜 주부들이 가정에서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한편⁽⁹⁾ 간장 된장 등을 공동으로 담그도록 하며⁽¹⁰⁾, 밥공장 가족식당을 이용하도록 권하고 있다.⁽¹¹⁾ 이처럼 어린이는 탁아소나 유치원이 맡아주고 밥은 원하면 밥공장에서 갖다 먹을 수 있고, 가정은 수직적인 유대관계보다는 夫婦中心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사회에서는 남성과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8)

탁아소, 유치원 현황

	탁 아 소		유 치 원	
	수(개)	수용인원(명)	수(개)	수용인원(명)
46			64	3,918
49	12	620	116	8,656
53	63	2,165	19	1,048
56	224	6,538	173	12,015
60 ⁽¹⁾	7,624	394,489	4,470	295,485
66 ⁽²⁾	23,251	877,200 (적령기 아동의 77%)	15,218	790,000 (적령기 아동의 60%)
70 ⁽³⁾	81,600	1,200,000	6,8000	950,000
75 ⁽⁴⁾	탁아소 유치원 6만여개—	수용인원 350만명		
78 ⁽⁵⁾	탁아소 유치원 6만여개—	수용인원 350만명		

자료출처 : (1) 이 상은 『조선중앙년감 1964』, p. 328, p. 204.

(2) 『조선중앙년감 1966~67』, p. 170.

(3) 『조선중앙년감 1971』, p. 255.

(4) 『로동신문』 1975. 4. 10. • 字(최고인민회의 제 5기 5차 회의 보고)

(5) 「평양방송」 1978. 3. 20일

(9) 『조선중앙년감 1971』, p. 21.

(10) 국토통일원, 『북한의 생활실태』, 1971. 12., p. 20

(11) 박관수 편, 『北韓의 家庭과 婦女子』, (공산권 문제연구소, 1972), p. 43.

이와 같은 북한 여성들의 生活變化가 과연 여성자신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면을 나타내고 있다.⁽¹²⁾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여성다움의 상실로서 女性的 男性化, 모성애의 상실, 자녀교육에의 관심회박 등을 들고 있으며, 아울러 勞動의 노예가 되어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자연 가족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결여된다 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반응은 가정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女性自身의 생활은 편해졌으며, 社會活動이 가능함으로써 政治 및 社會的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자기들의 權利를 주장하게 되어 여성의 地位가 향상되었고 男女平等이 이루어졌다 는 것이다. 또한 가정에 물질적 도움을 줄 수 있으며 勞動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黨에 충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에서의 女性的 지위와 역할은 지난 30여 년간 상당한 變化를 거쳐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法的이고 制度的인 면에 있어서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진일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女性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地位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참으로 인간적인 해방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男女平等이란 人間으로서의 존엄성과 價值에 있어서의 平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女性的 政治參與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北韓의 공산체제는 黨의 통제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立法, 行政, 軍, 司法機關 및 각종 社會團體들을 로동당의 下部體系로 조직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에서는 비록 인민에 의해 선출된 代議員이라 할지라도 권력의 핵심그룹이 책정한 基本政策에는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女性의 정치적인 활동을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12) 국토통일원; 『북한 異質化實態調查』, pp. 640-646. (이하 『북한 이질화실태조사』로 인용.)

이 조사는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주관으로 1978년도에 월남귀순자중 90명을 대상으로 북한 실태파악을 위한 면담조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면담자의 절대다수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관한 한 「남성의 눈을 통해 본 여성 문제」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제약을 안고 있다.

결론도 쉬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男性政治人도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女性政治人们이야 하는 반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男女를 불문하고 民主社會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가운데서도 女性들이 정치영역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이 그 體制維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女性의 정치참여도를 간접참여와 직접참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편의상 여성의 선거권 행사, 정치학습 참여 및 군중대회 참여 등을 간접참여로 규정하고, 여성들이 직접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활약하거나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당간부, 행정관료 등으로 활약하는 것을 직접참여로 구분하여 그 참여정도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간접참여

가) 선거권

北韓은 1946년의 남녀평등권법령⁽¹³⁾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평등함을 명시함으로써 남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동등하게 부여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일곱 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열 한 차례에 걸친 지방주권기관의 선거를 실시하였다. 초창기부터 2기까지는 선거에서 흑백합을 사용하였으나, 1962년 10월 3기 대의원 선거때부터는 단일합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투표율은 거의 100%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 이질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선거참여도를 묻는 항목에서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보통으로 참여한다”가 35%, “소극적인 참여”가 11%로 나타나 自意든 他意든 간에 선거권을 公民의 의무로 알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⁴⁾

이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1953년 이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참여”가 16%에 불과하던 것이 점차 증대되어 1971~78년에 와서는 66.5%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예비지식이 없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13)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은 9조로 되어 있는데全文은 다음을 참조.

『北韓法令沿革集』 제 1집, pp. 729-730.

(14) 『북한 이질화실태조사』, pp. 649-650.

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公民意識이 쏙트고 선거권을 하나의 權利行使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나) 政治學習

정치학습이란 곧 思想教育을 말한다. 북한주민이면 누구나 다 사상교육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1960년대 전반기까지는 주로『金日成選集』이나『金日成 抗日鬪爭史』와 아울러 공산주의 교양, 로동당歷史 등을 사상교육의 주 내용으로 하여 매일 한두 시간 혹은 주 2~3회 정도로 강의, 토론, 讀報會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는 형식을 취해 왔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우상화가 극치에 달하자 김일성의 교시나 당정책로선의 해설에 주력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김일성 일가족을 革命家로 부활하기 위한 김정일, 김일성의 生母인 강반석에 대한 학습까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政治學習은 주로 각급 당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女性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학습은 주로「민주여성동맹」이 담당하고 있다. 「女盟」은 어머니학교를 운영하고, 어머니 전람관을 설치하며「강반석 어머니 학습회」를 개최하는 등등을 정치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어머니학교는 1961년 초까지는 북한 가정주부들의 文化水準向上과 위생, 및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다가 1961년 9월 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여맹」의 과업이 여성들 속에서 階級敎養事業을 강화함에 있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게 되자 점차 정치문제까지 취급하게 되었다.

1962년「여맹」은 35,306개에 달하는 어머니학교와, 광범하게 조직되어 있는 독사반을 재정비하였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여성들의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공산주의 「後備隊」로서 자녀를 육성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社會主義 건설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는 42만 8천여명의 가정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였고, 10명의 努力英雄, 2,164명의 각종 수훈자와 3천 5백여명의 여성천리마기수 등 수많은「모범 여성」들이 배출된 것이다.⁽¹⁵⁾

어머니 전람관은 1961년 11월 16일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김일성이 “모든 북한의 어머니는 공산주의적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을 공산주의의 후비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교시에 따라 창설된 것이다. 총전평 전

(15) 『조선중앙년감 1963』, p. 188.

오백평에 3개의 기본관으로 구성된 전람관은 제 1 관에는 女性解放을 위한 黨과 首領의 「配慮」, 강반석여사 및 여성영웅들에 대한 자료 등이 전시되었고, 제 2 관에는 어린이 교양과 관련된 자료가, 제 3 관에는 어머니 교양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었다. 관람자들에게는 감상문을 쓰고 의견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전람관의 선전내용과 일치하는 공산주의적 어머니가 되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한다.

「강반석 어머니 학습회」는 북한주민들에게 강반석의 사상을 계승토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회는 김일성의 지배체제를 옹호하고 그 家系까지도 우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강반석 여사를 따라 배우자』 등의 책자를 통한 이 학습회는 단순한 학습회가 아니라 그 「革命精神」을 배움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2~3배」 달성해야 한다는 경제목표달성과도 결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김일성의 唯一思想을 주입시키고 모든 여성들을 공산주의 어머니로 교육하기 위한 정치학습에 여성들은 과연 얼마만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가? 『북한 이질화실태조사』에 따르면⁽¹⁶⁾ 전체의 65%가 그저 黨에서 하라니까 빠질 수 없어서 참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정치학습에의 참여는 黨이나 조직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보기가 여성의 정치활동에의 참여 이유를 “조직에의 권유” 때문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고 “강제동원”으로 참여한다가 25.5%로 전체의 80%가 他意에 의해 참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⁷⁾ 시기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조직의 권유에 의한 動員의 비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촌보다 도시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群衆大會

여기서 군중대회라 함은 「群衆集會」, 「示威運動」 또는 국가적인 「記念行事」 등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국경일은 물론 외국의 元首를 접견하는 일에서부터 각종 결기대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중대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여성들은 여성들과 관계되는 記念日인 국제부녀절(3월 8일), 강반석탄

(16) 『북한 이질화실태조사』, pp. 653-654.

(17) 상계서, pp. 657-659.

생일(4월 20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7월 30일), 「여맹」 창립기념일(11월 18일) 등의 군중집회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 그 밖의 군중대회에도 참여해야 한다. 군중대회에의 참여 역시 조직의 권유나 강제동원에 의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2) 直接參與

여성의 정치참여는 선거권 행사나 정치학습, 군중대회와 같은 간접참여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선출되어 정치일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행사로까지 확장되었다. 김일성은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된 북조선 인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연설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였다.⁽¹⁹⁾ 그러나 실제로 초기 여성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극히 미약한 형편이었다. 더구나 선거를 대비하여 실제로 中央黨에서 여성 입후보자의 비율을 事前에 결정하여 각 지역 및 계층별로 안배하는 설정이므로 자발적인 피선거권 행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最高人民會議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여성들이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표 1>과 같다. 총 대의원수에 대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보면, 1962년 2기에서 다소 줄었으나, 1967년 4기부터 증가되기 시작하여,

표 1. 역대 대의원 중 여성대의원 현황

구분 기별	선거일자	대의원 총수	여성대의원수	대의원 총수에 대한 여성대의원비율(%)
1기	1948. 8. 25	572(명)	69 ⁽¹⁾ (명)	12.1(%)
2	1957. 8. 27	215	27	12.6
3	1962. 10. 8	383	35	9.1
4	1967. 11. 25	457	73	16
5	1972. 12. 12	541	113	21
6	1977. 12. 11	579	120	20.8 ⁽²⁾
7	1982. 2. 28	615	— ⁽³⁾	—

자료출처 : (1) 金南植, 『實錄南勞黨』(서울 : 新現實社, 1975), p. 408.

(2) 日本國際關係共同研究所, 『北朝鮮研究』(1978. 1月字), p. 9.

(3) 『로동신문』은 물론 방송에서도 제7기 여성대의원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1982. 3. 2日字에 615명 대의원 전원 명단이 게재되고 있으나, 성별 표시는 없다.

(18) 상계서, pp. 655-656.

(19) 『조선중앙년감 1972』, pp. 230-231.

1970년대의 5·6기에서는 여성대의원이 전체대의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女性代議員의 數가 많은가 적은가는 그 사회의 계급구조, 종교, 文化構造 등에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정치기구 자체나 充員方法 및 黨의 성격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北韓의 경우는 오로지 黨에서 黨方針으로 적정선을 정하여 각계각층별로 按配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대의원들이 有名人士가 아니라 千里馬 作業班長과 같은 노동자 출신으로 상당수의 「노력영웅」이 대의원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원의 선출과정이 당의 추천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들 여성 정치인의 활동 또한 극히 제한된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득란, 박경애, 허정숙 등 몇몇 여성정치인이 多選으로 중앙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대부분의 여성대의원들은 그 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다.

나) 地方主權機關

지방주권기관인 地方人民會議는 일반선거에 의해 인구비례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道人民會議와 市·郡人民會議가 있다. 초기에는 道, 郡, 里(邑, 노동자구) 단위로 人民委員會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1972년 12월 新憲法에서 郡을 최하급 행정단위로 규정함으로써 市·郡人民會議도 이에 준하게 되었다.⁽²⁰⁾ 대의원이 되기 위한 후보자는 원칙상으로는 정당·사회단체 및 각 협동농장 등에서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의 철저한 심사와 비준이 있어야 한다.

地方人民會議는 지방의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해당行政委員會, 委員長을 선출하고 소환하는 등 중요한 업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地方人民會議에 여성들이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 그 참여도를 살펴 보면 <표 2>와 같다.

1947년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여성대의원이 전체 대의원 총수의 13%를 차지하던 것이 1956년 선거에서는 약 20%를 점하고 있어 대의원 5명 중 1명을 차지하고 있다. 1959년 선거로 넘어가면서 여성대의원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약 25%를 차지하여 4명에 1명꼴을 점하게 되었다. 1963년 선거의 경우 최하급 인민회의대의원 중 여성이 30%를 보이던 것이 1967년에는 33%까지 상승하여 3명 중 1명이 여성으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20) 국토통일원, 『北韓의 政治實態調查：北韓의 地方黨·政組織』(1978), p. 267.

표 2. 地方人民會議 선거 및 男女代議員 構成 비율

구분 선거일자	인민위원회별	대의원총수	그중여성 대의원수	대의원총수에 대한 여성대의원의비율
1946. 11. 3 ⁽¹⁾	도, 시, 군 인민위원회	3,459(명)	453(명)	13.1(%)
1947. 2. 3 ⁽²⁾	면 인민위원회	12,544	2,986	23.8
	리 인민위원회	53,314	7,049	13.2
1949. 3. 30 ⁽³⁾	도 및 평양시 인민위원회	689		
	시 인민위원회	460		
	군 인민위원회	4,561	869	14.8
	구역 인민위원회	143		
1956. 11. 27 ⁽⁴⁾	도 인민위원회	1,009	200	19.8
	시, 군(구역) 인민위원회	9,346	1,900	20.3
	리(읍,로동자구) //	54,279	11,196	20.6
1959. 2. 28 ⁽⁵⁾	시, 군(구역) //	9,759	2,508	25.7
	리(읍,로동자구) //	53,882	13,708	25.4
1963. 12. 3 ⁽⁶⁾	도(직할시) 인민회의	2,517	571	22.7
	시(구역), 군, 인민회의	14,303	3,820	26.7
	(리)읍,로동자구 //	70,250	21,062	30.0
1967. 11. 30 ⁽⁷⁾	도 인민회의	3,305	744	22.6
	군 인민회의	18,673	4,906	26.3
	리(읍,로동자구) //	84,541	27,946	33.1
1972. 12. 12 ⁽⁸⁾	도 인민회의	3,185	729	22.9
	시, 군 인민회의	24,784	6,402	25.8
1975. 2. 27 ⁽⁹⁾	시, 군 인민회의	23,833	6,206	26.0
1977. 3. 4	도 인민회의	3,244	763	23.5
	시, 군 인민회의	24,268	6,300	26.0
1981. 3. 5 ⁽¹⁰⁾	도 인민회의	3,705	— ⁽¹¹⁾	—
	시, 군 인민회의	24,191	—	—

자료출처 :

- (1) 『조선중앙년감 1949』, pp. 83-84.
 (2) " " "
 (3) 민주조선사 발행, 『국내외주요일지』 (1949), p. 261.
 (4) 『조선중앙년감 1958』, p. 175.
 (5) 『조선중앙년감 1960』, p. 205.
 『로동신문』 1959년 3월 3일자 1면.
 (6) 『조선중앙년감 1964』, pp. 152-153.
 (7) 『조선중앙년감 1968』, p. 63.
 (8) 『로동신문』, 1972년 12월 14일자 1면.
 (9) 『조선중앙년감 1976』, p. 275.
 (10) 『로동신문』, 1982. 3. 7일자.
 (11) 제 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경우와 마찬가지로 11차 지방인민회의도 여성대의원 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있다.

그러나 1972년 선거때부터는 신현법에 의거 郡을 최하급 행정 단위로 규정함으로써 가장 많은 여성대의원을 배출하던 里인민회의가 없어지나 市·郡의 경우 여전히 26%라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성의 지방주권기관에의 진출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1981년 선거에서 남녀의 구성비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²¹⁾ 지금까지의 추세로 미루어 보아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다) 政務院

남한에서도 여성들이 행정부 고위직에 진출하는 정도는 극히 미약한 실정인데 북한도 이 점에선 예외가 아닌 듯하다. 허정숙이 10년 넘게 相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모두 잠깐씩 거쳐 간 정도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때 「輕工業委員會」副委員長을 지낸 바 있는 金福信이 첫 여성 부총리로 기용되었다고 한다.⁽²²⁾ 女性들이 政務院 相을 역임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박정애—농업상(1961. 9~1962. 10)
- 허정숙—문화선전상(1948. 9~1957. 8) 및 사법상(1957. 8~1959. 8)
- 박영신—문화상(1966. 9~72. 8)
- 이효혁—식료일용품공업상(1967. 1~71. 3)
- 윤기경—재정부장(1981. 10~)

라) 勞動黨

북한 정치체계에서 勞動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고인민회의를 국가 최고의 주권기관이라고 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勞動黨을 정점으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이 결정한 정책을 지지하고 정무원이 집행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 있어서 政治權力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勞動黨 中央委員會에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북조선 勞動黨 창당 이래로 1965년 박정애가 숙청당할 때까지 박정애는 명실상부한 북한여성의 제 1 인자적 위치에 있었다.⁽²³⁾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

(21) 8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대의원 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 것은 이젠 남녀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다.

(22) 중앙일보사 동서문제연구소, 『북한인명사전』, 1981, p.56.

(23) 박정애는 김용범의 치로 모스크바에서 레닌노동노력자 대학을 졸업한 후 1930

표 3. 黨中央委員會

당 대 회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청 위 원	후 보 위 원
제 2 차 당대회 (1948. 3. 27)			박정애	
제 3 차 당대회 (1956. 4. 23)		박정애	허정숙 박정애	
제 4 차 당대회 (1961. 9. 11)			박정애 김옥순	이양숙 황순희 박경숙 이영순 한경숙
제 5 차 당대회 (1970. 11. 2)			오숙희 이선희 유순희 전영희	허창숙 김금우 허영숙 왕옥환
제 6 차 당대회 (1980. 10. 10)			허정숙 김성애 유정숙 박영순 황순희	윤기정 왕옥환 허창숙 이양숙 백설희 정경희

※ 위의 자료 출처는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북조선문제』 등에서 얻은 것으로
완전한 명단은 되지 못하여 여성으로 확인된 사람만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장을 역임하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여성민주동맹 위원장 등의 요직을
겸임하였고, 실제로 정치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한때 허정숙이 10여년간 相을 지내면서 실권을 행사했으나 역시 정치적으로
몰려났다가 70년대 후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이란 명목상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최근
자료⁽²⁴⁾에 의하면 정경희가 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당서열 27위를 기록하
고 있어 여성 중 가장 서열이 높고, 다음으로 허정숙이 54위, 「여맹」 위원
장인 김성애가 105위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노동당원이 되는 데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입당문제
는 성별에 의하여 좌우되기 보다는 출신성분과 사회주의 건설에의 참여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수층 여성의 경우 지도자가 되는 요건으로 黨性
과 가정환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일반주민층에서는 黨性과 함
께 직장에서의 노력영웅을 들고 있다.⁽²⁵⁾

열성당원으로 혹은 노력영웅으로 당의 부름을 받아 활약하는 여성정치인
들은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가? 『북한 이질화실태조사』에 의하면⁽²⁶⁾
여성인력동원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상징적인 존

년경 부부가 평양에 침투하여 평양 고무공장에서 노동하면서 지하조직 활동 중
체포되어 8·15 당시 출옥.

(24) 『北朝鮮問題』 1980. 11. 30日, 43·44 합병호, p. 13 및 pp. 28-30.

(25) 『북한 이질화실태조사』, pp. 660-671.

(26) 상 동.

재라고 나타났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권익을 옹호·대변한다는 응답은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여성정치인들은 정치일선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본연의 업무와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고유업무보다는, 당과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성인력을 효과적으로 동원시키는 데 더 큰 활동의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女盟」을 통한 政治活動

북한 최대의 여성단체인 民主女性同盟의 조직과 간부진 및 主要事業을 살펴 봄으로써 女盟을 통한 북한여성의 정치활동 내지는 단체활동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1차 대회 이래로 여맹의 사업내용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여맹이 하나의 상징적인 여성단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당시의 國家施策에 발맞추어 사회주의 건설의 한쪽 수레바퀴 노릇을 착실히 담당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組 織

1945년 11월 18일 평양에서 박경애를 위원장으로 「民主女性總同盟」이 창립되었다. 이들은 6·25동란중인 1951년 1월 18~19 양일간에 걸쳐 합동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²⁷⁾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남북조선 근로단체들의 통일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南北朝鮮民主女性同盟의 단일한 조직으로 통합하여 오늘의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되었다.⁽²⁸⁾ 조직기구로는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郡·里위원회 등 행정단위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생산직장에는 초급단체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18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맹원이 될 수 있으며,⁽²⁹⁾ 주로 가정주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道級以下の 여맹 사무실은 黨舍內에 있을 정도로 당의 엄격한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여맹은 1946년 10월 16일 「國際民主女性同盟」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성단체와 친선관계를 맺게 되었다. 현재 맹원수는 22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³⁰⁾

(27) 金南植, 전계서, pp. 103-111 참조.

(28) 『조선중앙년감 1951-52』, p. 480.

(29) 국통일원, 『북한의 생활실태』 pp. 295-297.

나) 幹 部

박정애는 창립 당시부터 1965년 제3차 여맹대회때까지 20년간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부위원장에는⁽³¹⁾ 조복례, 김영수, 리경희 등이 선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 김옥순, 김계순, 김귀선, 김은순, 이종순 등이 맡았다.

1959년 2월 26일 당사업방법에 대한 연설에서 김일성은 “여맹 위원장은 여성단체를 활동시켜 노동자 가족을 돌보는 사업,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 등을 보살피는 사업”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61년 11월 16일 전국 어머니대회에서는 김일성이 “자녀교양에서의 어머니들의 임무”에 관해 연설하면서 여맹 간부의 자격이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간부가 아니라 생산활동에 충실한 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³²⁾

1965년에 개최된 여맹 제3차 대회는 김옥순을 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박정애 시대의 막을 내리게 했다. 1971년 여맹은 제4차 대회를 열고 김일성의 친인 김성애를 위원장에 선출하여 김일성 족벌체제의 단면을 드러냈다.⁽³³⁾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애는 “브르죠아 인테리 여성들이 여맹사업을 감당한다는 그릇된 사상을 버리고 계급적 바탕이 좋고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하는 일꾼”으로 간부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4차 대회에서는 부위원장직을 없애고 비서장제도를 채택하며 집행부를 두어, 이에 김일성을 추대한 것이 조직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 主要事業

1946년 창립 당시의 여맹은 黨의 路線을 따르면서 무엇보다도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의 문맹퇴치에 힘쓰는 등 초기 여성운동의 과제를 담당할

(30)		盟 員 數					단위：名
년 도		1945	1960	1962	1965	1971	1977
맹원수		40만 ¹⁾	220만 ²⁾	250만767 ³⁾	273만	273만	260만 ⁴⁾

자료출처 : (1) 『로동신문』 1971. 10. 10 日字 2面

(2) 『조선중앙년감 1961』, p. 149.

(3) 『조선중앙년감 1964』, p. 156.

(4) 現代朝鮮研究所, 전개서, p. 214.

(31) 『조선중앙년감 51-52』, p. 480.

(32) 조선녀성사, 『전국어머니대회 문헌집』(평양, 1962), pp. 31-33.

(33) 1966년 여맹위원장 김옥순이 남편 최광과 함께 강제 노동직장으로 추방되어 그 자리를 김성애가 차지하였다. (『로동신문』 1966년 10월 21일자.) 김성애는 노동자의 딸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내각 사무국에 취직한 것을 인연으로 1965년에 김일성의 치로 부각되었다.

결의를 보였었다. 그 후 6·25동란을 거쳐 1951년 당시의 상황에 부응하여 전쟁고아, 미망인, 軍務者, 遺家族 둘보기 등 원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여맹을 당에 튼튼이 끌어 둘 것을 강조해 왔다.⁽³⁴⁾

이러한 여맹의 초기 과업은 1961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일대 전환점에 들어가게 된다. 즉 지금까지 여맹이 펼쳐오던 여성의 지위향상같은 단순한 여성운동이 아니라 黨이 내세우는 주요 과업을 관철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제3차 대회에서 여맹은 첫째, 정치·사상교양과 공산주의 도덕교양의 강화, 둘째, 사회주의 계승자로 후대 육성, 셋째, 보다 광범한 사회주의 전설에의 참여, 넷째, 文化生活 수준의 향상, 다섯째, 전체 인민의 무장화란 당의 호소에 동조, 여섯째,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사업에서 구현하여 여성을 혁명과업 수행으로 조직·동원, 일곱째 남조선의 애국여성들과의 연계 강화 및 단결, 여덟째, 전세계 진보적 여성들의 공동투쟁에 적극 참여 등을 주요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³⁵⁾

여맹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은 여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해 여맹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수령」의 歷史學習과 “강반석 여사의 혁명적 품성을 따라 배울 것을” 처음으로 내세운다. 이것은 60년대 후반에 들어서의 唯一思想體系의 확립 및 김일성 家系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1975년에 개최된 여맹창립 30주년에서는 김일성의 교시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삼대혁명 수행을 위한 여맹의 역할이 강조된다. 후대들을 공산주의 후비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머니학교의 운영을 강화시키고, 모든 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전개하여 여맹을 전투적인 여성혁명가 부대로 조직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여맹은 창립초기를 제외하고는 한별도 독자적으로 사업내용을 수립한 적이 없다. 黨의 사업이 곧 여맹의 사업으로 나타나 여성의 힘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黨의 시책을 함께 맞들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질화실태조사』에 의하면 여맹의 주요 사업으로 “여성을 상대로 정치·사

(34) 『統一朝鮮年鑑 1964』, p.337.

(35) 『조선중앙년감 66-67』, p.169.

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여성의 활동을 감독·지시한다”와 “여성의 권익을 옹호·대변한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생의 역할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5. 結論

과거 30년간 北韓女性의 地位는 가정생활의 變化에서부터 시작하여 괄목할 만한 사회진출과 정치참여 등을 통하여 급격히 신장되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女性은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男女平等의 문제는 인간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점진적인 制度의 变遷을 겪은 것이 아니라 소위 社會主義理念을 동원하여 法條文上으로는 「완벽한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거기에 人間을 두드려 맞추었다고나 할까? 制度가 앞서 가면서 사람을 끌어 당겼으나, 그 運營의 妙가 여성들 자신에게 주어지지 못하고 黨에 완전히 구속받음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男女平等의 결과는 가정적으로는 부부가 과중한 노동부담으로 인하여 공동취사나 밥공장 이용, 자녀의 집단양육 등 가정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갔고, 경제적으로는 당의 生產目標에 빌맞추어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경제활동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政治·思想적으로는 여성들 자신이 훌륭한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식을 공산주의의 대를 이을 「後備隊」로 양육시킬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男女平等은 공산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女性人力을 社會主義 건설에 착실히 勤員시킨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的 平等」은 이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예비지식이 없이 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정치 활동에 크게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制度가 黨中心으로 운영되는 가운데서도 부수적으로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여성의 폐선 거권 행사의 경우도 자유경쟁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黨에서 적정비율로 각 계층별, 지역별로 안배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여성정치인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도 무시못할 결과이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역시 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열성 정도에 따라 좌우되지 性別로 인한 차등대우는 받지 않는 것 같다. 비록 女性政治人の 主任務가 여성의 정치·사상교육을 담당하며 여성인력을 동원하는 데 主力하고 있으나 70년내에 들어오면서 차츰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대변하는 여성 고유의 업무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